

#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자유시민대학」은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인문교양, 민주시민, 학점은행제 등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평생학습 교육사업으로,
- 나.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가 '18년 1월 준공예정인 바, 市 직영 운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본부캠퍼스 개관, 교육과정 확대 등 신규 사업 증대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,
- 다.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(신규) 계약을 체결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〈추진근거〉

- 평생교육법 제20조(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
-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(사업) 및 같은 조례 제29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3호

## 〈추진 필요성〉

- 서울자유시민대학은 '13년 설립 이후 평생학습 교육사업으로 성장·발전하면서 운영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,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등 市 직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적 운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함
- 서울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자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다. 위탁사무 내용

-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
- 학점은행제 및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
- 학습자 모집·관리 및 강사 관리 풀 구축·운영
- 대학 연계 시민대학 및 민간단체 협력 공모 사업 운영
-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
- 캠퍼스별 시설 관리·운영, 보안·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종로구 송월길 52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485㎡(지하1층 ~ 지상3층)
- 시설용도 :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

○ 위치도



지역여건	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도보 15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, 서울역사박물관, 경희궁 주변
------	--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18. 1. 1. ~ 2020. 12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협약(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사업비('18년) : 3,200백만원

[사업예산(안)]

예산항목	예산액(천원)	산 출 내 역
<b>총 계</b>	<b>3,199,880</b>	
인 건 비	1,166,6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7명(기본급 및 제수당)</li> <li>▶ 시민대학장(1명) : 27,072천원*1명=27,072천원</li> <li>▶ 사무국장(1명) : 75,675천원*1명=75,675천원</li> <li>▶ 팀장(2급, 2명) : 58,499천원*2명=116,998천원</li> <li>▶ 대리(3급, 4명) : 47,989천원*4명=191,956천원</li> <li>▶ 주임(4급, 9명) : 38,247천원*9명=344,223천원</li> </ul>
사 업 비	1,688,18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육과정 개발 자문단 : 46,800천원</li> <li>◦ 캠퍼스별 교육과정 운영비 : 738,780천원</li> <li>◦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 : 637,600천원</li> <li>◦ 네트워크 시민대학 사업 : 100,000천원</li> <li>◦ 홍보 및 온오프라인 소통강화 : 80,000천원</li> </ul>
운 영 비	345,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캠퍼스별 공공요금 : 103,100천원</li> <li>◦ 본부캠퍼스 시설관리 유지비 : 242,000천원</li> </ul>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□ 평생교육법

○ 제20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

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# □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

○ 제18조(사업)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2.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○ 제29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○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 김아름 (☎ 2133-3991)